

## 보 도 자 료



보도 일시	2022. 4. 29.(금) 조간	배포 일시	2022. 4. 28.(목)		
		책임자	과 장 이수영(02-2100-2650)		
담당 부서	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	담당자	사무관 현지은(02-2100-2652)		
<총괄>			사무관 신용진 (02-2100-2644)		
			사무관 장원석 (02-2100-2654)		

##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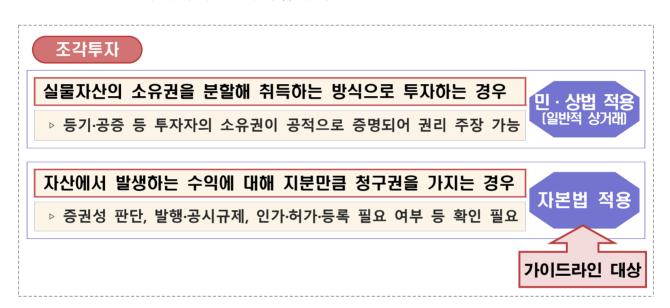
#### 〈 주요 내용 〉

- □ 금융위원회는 최근 확산 중인 조각투자\* 관련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과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「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」을 마련하였습니다.
  - \*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,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·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
- □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은 계약내용, 이용약관 등 투자·거래 관련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안별로 판단합니다.
  -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·형식·기술과 관계없이 표시하는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증권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해석·적용합니다.
- □ **증권인 조각투자 상품**을 발행·유통하려는 사업자는 **자본시장법 및 관련** 법령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.
  - 다만, 혁신성 및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고 투자자 보호체계와 발행· 유통시장 분리를 갖춘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
## │. 추진 배경

- □ "조각투자"는 일반적으로 실물 자산 등의 소유권을 분할한 지분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고, 대부분의 투자자들도 자신들이 투자를 통해 실제 소유권의 일부(조각)를 보유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.
  - 이렇게 소유권을 직접 보유하는 경우\* 투자자들은 소유의 대상이 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고, 조각투자 사업자의 사업 성패와 무관하게 재산권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이는 기본적 으로 실물 거래로서 원칙적으로 금융규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
    - \* (예) 아파트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투자·보유하면서 그 월세와 매각차익을 나누어 갖는 경우 → 해당 아파트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사업성패와 아파트의 재산적 가치는 무관
- □ 그런데 최근들어 **투자자들의 일반적 인식과 달리**,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**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** 등의 형태로 **조각투자 사업자가** 조각투자 상품을 **발행**하거나 **이를 유통**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.
  - 이러한 조각투자 상품의 경우 권리 구조, 세부 계약내용 등 개별 상품의 실질에 따라 **증권에 해당할 가능성**이 있음에도,
    - 일부 조각투자 사업자는 증권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,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자본시장법에 마련되어 있는 증권의 발행과 유통 관련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
    - 투자자들 또한 정확한 권리 구조를 알지 못하고, 막연히 조각투자대상 실물자산 등을 직접 소유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    - ※ '22.4.20일 배포된 금융감독원 보도자료("조각투자"에 대한 소비자경보 발령) 참고
- □ 이에 개별사례별로 매우 다양한 형태를 갖는 조각투자 사업 및 상품과 관련하여 잠재적 위법성과 향후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.

- □ 정부는 조각투자 사업과 관련한 **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**과 **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고려사항**을 **안내**하기 위하여 「**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**」(이하 "가이드라인")을 마련하였습니다.
  - ※ 관련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으며, 증권선물위원회 보고 및 금융발전심의 위원회 자본시장분과 심의를 거쳐 4.27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보고
  - 동 가이드라인이 조각투자에 대한 법규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위법 행위 발생을 예방하고, 충실한 투자자 보호를 토대로 한 건전한 시장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.



## Ⅱ. 주요 내용

□ 가이드라인은 크게 조각투자 상품의 **증권성 판단 기준**과 증권에 해당하는 조각투자 상품(이하 "조각투자 증권")과 관련한 조각투자 사업자의 고려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## 증권성 판단

□ "증권"은 금융투자상품 중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, 채무·지분·수익·파생결합·투자계약증권 등으로 분류됩니다.

- 증권성은 제반 사항\*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안별로 판단하며, 방법· 형식·기술과 관계없이 표시하는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.
  - \* 이용약관 외에도 조각투자대상의 관리와 운용방법, 수수료·보수 등 각종 명목의 비용 징수와 수익배분의 내용. 광고의 내용. 여타 약정 등 감안
- 기존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**투자자 보호라는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의 본질적 목적**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해석·적용할 것입니다.
- □ 조각투자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할 계획이 있는 사업자(이하 "조각투자 사업자")들은 증권에 해당하는 조각투자 상품을 발행하려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규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
  - 또한, 제공하려는 서비스(사업)의 내용에 따라 **투자중개업·집합투자업** 등\* **인가·허가·등록**이 필요할 수 있어, 사업실질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
    - $\star$  ① 일상적 운용지시를 받지않고 운용(취득·처분 등)해 결과를 배분  $\to$  집합투자업( $\S46$ )
      - ② 타인 발행 증권에 대한 청약의 권유, 청약, 청약의 승낙을 영위 → 투자중개업(§6③)
      - ③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 → 거래소(§8-2②)
- □ 특히, 증권 유형 중 **투자계약증권**은 그 적용범위가 **폭넓게 인정**될 수 있고, 적용례가 많지 않아\*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**면밀히 검토**할 필요가 있습니다.
  - \* 증권선물위원회는 ㈜뮤직카우에 대한 증권성 판단시 "투자계약증권" 개념을 최초로 적용('22.4.20 보도자료 참고)
  - 투자계약증권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투자자가 얻게 되는 수입에
   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사업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로서,
    - (i) 사업자 없이는 조각투자 수익 배분 또는 손실 회피가 어려운 경우,
    - (ii) 사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시장의 성패가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,
    - (iii) 투자자 모집시 사업자의 노력·능력을 통해 사업과 연계된 조각투자 상품의 가격상승이 가능함을 합리적으로 기대하게 하는 경우 등입니다.
  - 반면, (증권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서)
    소유권 등을 직접 분할하거나 개별적으로 사용・수익・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.

## 2 조각투자 증권 처리원칙

- □ "조각투자 증권"을 발행·유통하려는 사업자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\*해야 하며,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대상이 됩니다.
  - \* (예) 증권신고서 제출.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. 무허가 시장개설 금지. 부정거래 금지 등

#### 조각투자사업의 적법성 확인 항목

■ 발행하려는 "상품"이 증권에 해당하는지

증권유형

지분증권 │ 채무증권 │ 수익증권 │ 파생결합증권 │ 투자계약증권

\_\_ 발행시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규제 준수 필요

• [예] 뮤직카우

#### ( 증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은 경우)

- · 소유권을 직접 분할 ⇒ 등기(예: 아파트), 소유권에 대해 공적 증명력 있는 방식(예: 공증)
- 사용·수익·처분 가능 ⇒ 직접 사용 목적(예: 회원제 콘도 회원권)

## ☑ 제공하려는 "서비스(업무)" 가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지

타인 발행 증권(투자계약증권 外)에 대한 청약의 권유, 청약, 청약의 승낙

투자중개업

#### 투자증개업 인가 필요

• [예] 농장주가 커피농장의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증권을 발행하고, 사업자가 농장주 대신 투자자에게 해당 증권에 대한 투자를 권유

일상적 운용지시를 받지 않고 운용(취득 · 처분 등)해 결과를 배분

집합투자업

#### 집합투자업 인가 필요

• [예] 사업자가 여러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다이아몬드를 공동구매한 뒤 투자자 지시 없이 자신의 판단으로 매각하고 손익을 투자자에게 배분

거래소

증권(투자계약증권 外)의 매매를 위하여 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

➡ 거래소 허가 필요

※ 예시는 모두 가공의 사례로, 특정 업체와 무관함

#### В 자본시장법 외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

- □ 사업화를 위해 자본시장법규 등 금융규제 일부의 적용을 배제받아야 하는 경우에는, '19년부터 시행 중인 「금융혁신지원 특별법」에 따라 일부 규정에 대해 한시적인 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("금융규제 샌드박스")
  -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**혁신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금융서비스**에 대해 **예외적·한시적으로 규제특례**를 부여하고 **투자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**을 검증한 후, 중·장기적으로 **관련 제도개선을 검토**하는 제도입니다.
  - 조각투자 증권에 대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있는 경우, 금융당국은 「금융혁신지원 특별법」상 심사 기준에 따라 혁신성 및 지정 필요성,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측면을 엄격히 심사할 예정입니다.

## **3**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시 고려사항

#### 가. 혁신성과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될 것

- □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이 **규제차익**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각투자 증권의 **혁신성과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**됩니다.
  - ① (혁신성) 조각투자 증권의 발행·유통이 금융시장, 투자자 편익 및 조각 투자대상 실물자산·권리 시장 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.
    - 단순히 사업자가 증권 관련 규제를 준수할 여건과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유 등으로는 혁신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.
  - ② (필요성) 조각투자대상 실물자산·권리 소관법령(샌드박스 활용 포함)에 따른 사업화가 불가능하여, 증권의 발행이 반드시 필요해야 합니다.
    - 만약 실물자산·권리 소관부처가 운영하는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사업화가 가능하거나, 해당 자산·권리 소관 법령상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.
  - ※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조각투자 관련 금융규제 특례인정을 위한 혁신성과 필요성 여부 판단에 있어, 해당 실물자산·권리 소관 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논의할 것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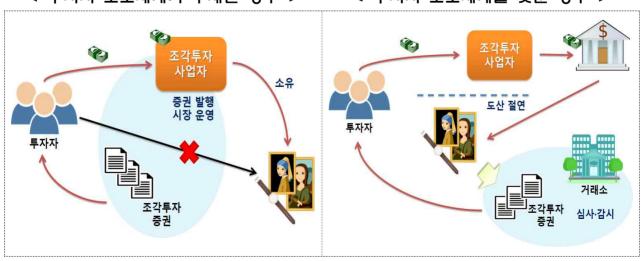
#### 나. 투자자 보호체계를 충분히 갖출 것

- □ 일부 규제에 대해 특례를 인정받는 경우에도 조각투자 **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보호체계**는 갖추어야 합니다.
  - 특히, 조각투자 증권의 <u>실제 권리구조가 조각투자의 특성 및 투자자의</u> 인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고, 조각투자 증권의 권리구조를 투자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**정확히 알리는 것**이 가장 중요합니다.
  - 투자판단에 중요한 사항을 투자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**설명자료와 광고**의 기준·절차를 마련하고, 약관·계약서를 교부
  - ② 투자자의 예치금은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 예치・신탁하고, 도산시에도 투자자에게 반환될 수 있도록 할 것
    - [비교사례] 이러한 투자자 보호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면…?
    - 투자자가 조각투자사업자에게 바로 예치금을 맡기게 되는 상황이 되어 조각투자 사업자가 도산하는 경우 투자자 피해 발생
  - 3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투자자 권리를 절연
    - 조각투자 증권 투자자의 투자목적은 조각투자 사업자가 아닌 실물 자산·권리에 투자하려는 것이므로, 도산절연이 이루어지지 않은 권리 구조는 "조각투자"에 적합하지 않습니다.
    - [비교사례] 이러한 투자자 보호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면…?
    - 투자자가 투자하려는 대상인 실물자산·권리는 계속 존재함에도 조각투자업자가 도산하는 경우 투자자가 보유한 증권의 가치도 소멸
  - ④ 증권 예탁 또는 예탁에 준하는 권리관계 관리·확인 체계 마련
    - [비교사례] 이러한 투자자 보호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면…?
    - 부동산 거래 이후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, 투자자가 매수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와 유사
  - 5 물적설비와 전문인력 확보
  - **6** 분쟁처리절차 및 투자자 피해 보상체계 마련

#### 다.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분리할 것

- □ 사실상 동일한 사업자가 조각투자 증권을 **발행**하면서 동시에 **유통시장을 운영**하는 것은 **투자자 피해 발생** 우려가 커, 원칙적으로 **허용되지 않습니다**.
  - [비교사례] 이러한 투자자 보호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다면…?
  - 기업이 주식 발행과 거래소 운영을 함께 하는 경우로, 주식 유통가격을 높여 추후 발행가를 높여 이득을 취하거나, 거래 수수료 목적으로 주식을 과잉 발행하는 등 부당행위 우려
- □ 그러나, **투자자 보호** 측면에서 해당 조각투자 증권의 **유통시장이 꼭 필요**\* 하지만 **유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**가 있을 수 있습니다.
  - \*(예) 투자대상 실물자산 등의 상품 속성상 투자기간이 매우 길어서 투자자들이 상황에 따라 현금화할 기회가 필요한 경우 등
  - 이러한 경우, 적절한 이해상충 방지체계\* 및 시장 운영체계를 갖추었는지 심사하여 예외적·한시적으로 발행과 유통시장 운영을 동일한 사업자가 수행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.
    - \* 시장 유통·퇴출기준 마련, 독립된 심사체계 마련, 정보교류 차단장치
    - \*\* 시장감시체계 구축, 투자자 정보제공 등
  - 다만, 향후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이 거래될 수 있는 적절한 운영·규율 체계를 갖춘 유통시장이 형성되면, 동일한 사업자가 증권을 **발행하면서 동시에 유통시장도 운영**하는 것은 **허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.**

#### < 투자자 보호체계가 부재한 경우 > < 투자자 보호체계를 갖춘 경우 >



## Ⅲ. 향후 계획

□ 금일 배포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**조각투자와 관련한 법령 적용** 및 **혁신금융** 서비스 지정 심사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며, 향후에도 필요시 가이드라인을 수정·보완하고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.

#### 【참고1】핵심 Q&A

[참고2]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(전문)

		책임자	과 장	이수영 (02-2100-2650)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	담당자	사무관	현지은 (02-2100-2652)
			사무관	신용진 (02-2100-2644)
			사무관	장원석 (02-2100-2654)
<공동>	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	책임자	국 장	박종길 (02-3145-8100)
		담당자	팀 장	장영심 (02-3145-8482)





## 참고1

#### 핵심 0&A

- Q1. 투자자보호 체계를 갖춘다면 조각투자 사업자 모두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지정받을 수 있는지?
- □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 기준에 따라 조각투자 증권의 **혁신성과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**되는 경우에만 투자자 보호 체계 등 세부 사항을 심사할 예정
  - 사업자가 기존 규제를 모두 준수할 역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지정하기는 어려움
- Q2.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요구되는 투자자 보호체계 및 발행·유통 시장 분리는 과도한 것 아닌지? (혁신을 저해할 우려는?)
- □ **증권**의 발행, 매매·중개, 유통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**공시**, **인·허가** 취득 등과 더불어 **다양한 행위규제**가 적용됨
- □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이러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대신 조각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과 중권규제의 취지를 감안한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하는 것
  - 특히, 권리 제조, 중개, 시장 개설·운영, 불공정거래 감시, 권리 보관·결제, 대금보관 등의 역할을 분리해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상호 확인·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보호의 기본 원리이므로, 발행과 유통의 분리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
- □ 금번 가이드라인의 배포가 **조각투자 시장이 투자자 보호와 조화**를 이루면서 **건전하게 발전**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함

## Q3.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기간 경과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?

- □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관련 규제를 모두 준수해야 함
  - 다만, 샌드박스 운영 결과 **개선이 필요한 규제**가 있다면 자본시장법규를 개정하여 **제도화할 예정**이므로, 이에 따라 **사업을 영위**할 수도 있을 것임

- Q4. 현재 운영중인 조각투자가 중권에 해당하는 경우 제재를 받게 되는지? 혹은, 샌드박스를 신청하거나 사업을 폐지한다면 제재를 면제받는지?
- □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· 유통하였다면 제재 대상에 해당
  - 단, 개별 사례별로 사업자의 **사전 예측가능성**, **투자자 피해 발생 여부**, **투자자** 보호 노력과 **사후조치** 등이 제재수준 결정의 **참작 사유**로 고려될 수 있음

#### Q5. 투자계약중권에는 유통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데, 제도개선 계획은?

□ 투자계약증권 관련 유통규제 적용 등 투자자 보호에 필요하나 현행 법령상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**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**임

# Q6.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경우, 샌드박스 지정을 위해 요구되는 도산절연을 어떻게 확보하는지?

- □ 조각투자 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**실물자산 · 권리 일부를 직접 소유**한다고 인식 하는 점을 고려하면 **투자계약증권은 투자자 보호에 적합하지 않은 증권**\* 유형
  - \* 투자계약증권은 조각투자 투자자의 권리가 조각투자 사업자의 사업성패와 긴밀히 연결
  - **도산절연을 요구**하는 것은, 자본시장법규상 다른 규제 적용이 배제되는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조각투자 증권의 권리구조가 **투자자의 인식에 부합**하도록 투자 계약증권이 아닌 다른 **증권 유형\*에 해당**해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라는 의미
    - \* (예)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받은 카사코리아, 루센트블록, 펀블은 신탁 수익증권 활용